

등록번호 제 호

소비자단체 등록증

1. 명칭:
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

3. 대표자 성명:

4. 주된 사업내용:

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
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 또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